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9 - 111} 호

공 고

『건축법』을 위반한 건축주에 대하여 위반(무허가)건축물에 대한 1차 시정명령 통지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,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여 『행정절차법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9. 07. 18.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

□ 공고기간 : 2019. 07. 18. - 2019. 08. 01.

□ 공고내용 : 아래 참조

1.공고 제목		위반(무허가)건축물에 대한 1차 시정명령						
2.대상자	임점*	주민번호	620709-2	주소	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9길 4*-**			
3.위반 내용		소재지	건축주 (소유자)	위 반 사 항			공정율	
				위치	면적(m ²)	구 조		
						지붕		벽체 (기둥)
홍제동 315-**	임**	7층(702호)	13.48	판넬	판넬	주거	100%	
4.공고 내용		위반(무허가)건축물에 대한 1차 시정명령						
5.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	건축법 제79조 「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」						
6.문 의 사 항		서대문구청 주택과 (☎02-330-8996)						

※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상기 위반내용에 대해 2019.08.02.까지 자진정비(완전철거및 원상복구)할 것을 통보하오니 자진정비 후 서대문구청 주택과(☎330-8996)에서 반드시 정비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